

# 금융소득종합과세, 아는 만큼 돈 된다

손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손님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도록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금융상품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민감한 걸까? 현명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절세는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



## 이상혁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전문위원  
sanghyoeklee@hanafn.com

- ▶ **학력·자격증**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2008년(45회) 세무사
- ▶ **현재 활동**  
KEB하나은행 PB사업본부 세무전문위원
- ▶ **기타 활동**  
2010~2014년 복인천세무서 재산세과 및 김포세무서 조사과 근무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등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의 크기와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7,000만원까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생긴다.

**세금 외에 늘어나는 것**

전업주부와 같이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부담은 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던 전업주부라면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등은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을 기본으로 부과되는데,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경우 본인이 스스로 부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와 별도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에는 소득 외에도 재산 정도와 자동차 소유 여부 및 연령 등을 모두 감안한 금액이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등은 세금과 달리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 아니라 매월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

대부분의 손님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져 연간 대상자가 10만 명 이상이 된 상황에서 단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손님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자산과 소득이 많을수록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지고, 특히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산에서 얻은 소득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법**

그러면 금융소득을 어떻게 관리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금융상품 별로 수입시기를 확인해서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보유한 자산의 특성과 연도별로 발생할 금융소득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예상하여 시기를 조절, 연도별로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금융소득을 가족에게 분산하는 것이다. 금융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한 사람 명의로 소득을 집중시키기보다는 가족명의로 소득을

세법상 금융상품 수입시기		
소득구분	금융상품	귀속시기
이자소득	채권	실제 지급 받은 날
	예금 및 적금	실제 이자 지급 받은 날
배당소득	펀드	환매하는 시점 (2016.4.1 이후)
	주식	잉여금 처분 결의일
	ELS	상환조건이 달성되어 배당지급 받을 때

## S ummary

- ①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이다.
-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 외에도 건강보험료 등의 비용이 늘어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 ③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금융소득을 시기별, 대상별로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 ④ 근본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전략은 절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분산할 경우, 가족이 벌어들인 총 소득은 같더라도 적용 받는 세율이 낮아져서 전체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렇게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신고를 통해서 명의를 이전해야 하며, 증여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가족들로 분산을 하되, 증여세 공제한도(배우자 10년간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내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한도 범위 이내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서 증여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투자를 할 때부터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상품이나 일정한 세율로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진정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해외주식펀드 등도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들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수익률이 낮은 금융상품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절세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세금 때문에 수익률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정책으로 갈수록 절세상품이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초기에 절세상품부터 꼼꼼하게 챙기는 지혜를 발휘해 보자. ㅎ

### 주요 비과세 상품 비교

구분	비과세 해외 주식펀드	ISA	저축성 보험
납입 한도	3,000만원	연 2,000만원 의무가입 5년(서민형 3년) 총 1억원 한도	없음 (일시납/ 5년 미만 적립식 2억원)
비과세 한도	없음 (가입일부터 10년간)	200만원(서민형 250만원) 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	없음
가입 자격	누구나	직전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누구나
유동성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출금 가능 중도인출 시에도 세제혜택 가능	5년간 의무가입 (서민형 3년 의무가입) 중도인출 시 세제혜택 없음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